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3. 13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2월 2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97.3.13)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공동주택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변경함(안 제11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 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3조의2)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 영훈)

금번 개정내용은 구세감면 및 추정기준일이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변경된 것은 주택관계법 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한 것은 그간 감면대상중 문제점이 내포되어 왔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명문화 함으로써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신설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시장 재개발에 관한 특례)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여 재래시장의 근대화를 이룸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審查 結 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년월일 : 97. 2. 2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공동주택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변경함.(안 제11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없음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4.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하며, 동조 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동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신 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 -----<u>사용승인일까지</u>----- ----- -----<u>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u>----- ----- -----<u>사용승인일부터</u>----- ----- -----</p> <p>제13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1.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 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